

2016년

EU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2016년

EU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 들어가는 말 ❧

최근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늘 주목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68%에 달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국의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통관·검역 및 위생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물류비용 등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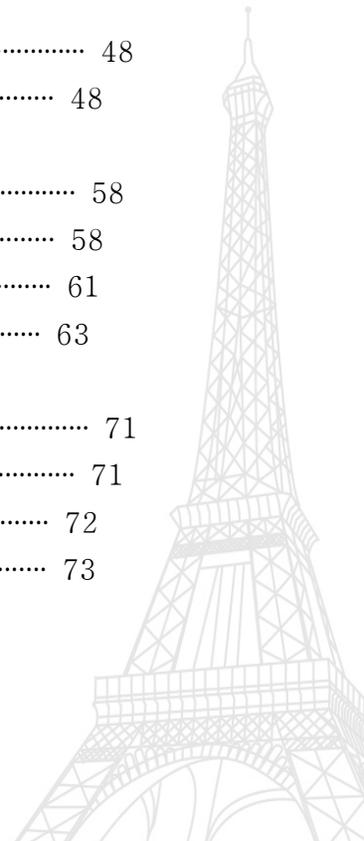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6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각종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 「EU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시장 개척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수시로 수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개정사항은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사이트인 www.kati.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시장개요	1
제1절 유럽연합(EU) 수출동향	1
제2절 시장여건 및 소비트렌드	2
제2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절차	3
제3장 검역제도	37
제1절 검역제도 일반	37
제2절 품목별 검역 제도	41
제4장 관세제도	45
제1절 관세제도 일반	45
제2절 농산물의 관세제도	46
제5장 라벨링제도	48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48
제6장 통관문제사례 및 시사점	58
제1절 통관문제사례 분석	58
제2절 시사점 및 대응방안	61
제3절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63
제7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71
제1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71
제2절 수출애로 및 조치사항	72
제3절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73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유럽연합(EU) 수출동향

1. 한국 농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	170,647	322,646	158,144	335,707	169,647	422,638
수입	1,817,310	3,482,783	2,856,963	3,649,700	2,180,796	3,600,111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제외)

2. 최근 3개년 수출 상위 5품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위	음료	23.7	커피조제품	33.2	커피조제품	38.6
2 위	라면	15.2	음료	26.0	음료	28.9
3 위	젤라틴	12.2	라면	19.4	라면	22.6
4 위	커피조제품	10.6	젤라틴	14.5	젤라틴	9.2
5 위	새송이버섯	5.4	새송이버섯	6.2	새송이버섯	7.0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제외)

시장여건 및 소비트렌드

- ❖ 아시안 식품을 비롯한 에스닉 푸드(Ethnic food,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전통음식) 소비 트렌드 지속 및 한국식품 입점 현지 유통업체 확대 추세
- ❖ 아프리카 시장 확대 추세에 지리적 근접성이 유리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음
 - 아프리카 GDP증가 및 EU-아프리카간 교역량 확대('11→15년 생산 진출 41%증가)
- ❖ 글루텐프리, 슈퍼푸드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강화
 -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특정 알레르기 기피 소비자들로 인해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추세
- ❖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관련 규제 강화 추세
 - 2018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신규 적용 예정으로 설탕함유음료 가격상승 전망, 100% 과일즙 음료나 우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품은 설탕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 로컬푸드 운동에 따른 자국산 소비 선호 분위기 지속 및 기업의 문화사회적책임(Cultural social responsibility) 강조 분위기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통관절차

1.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 ■



출처 :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나.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p>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p>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 적하 목록 미 제출(1회 이상) - 적하 목록 허위 제출(3회 이상)
물품반입	<p>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신고	<p>수입신고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신고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수입 신고 처리 (Acceptance of a declaration)	<p>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p>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p>

출처 :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다. ENS(Entry Summary Declarartion) 전송

- ❖ 2011년 1월 1일 부터 유럽 EU manifest 사전 신고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선사는 유럽의 첫 기항지 항구 세관에 ENS(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전송해야 함. 신고대상은 유럽연합 관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이며, 사전 전자적 형태의 신고를 해야함. 적용대상 화물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화물, 유럽을 통해 환적되는 화물, 환적을 목적으로 유럽에서 재취급(re-loaded)되는 화물, FROB(Freight Remaining on Board) 화물 등임

- ❖ ‘ENS’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시간은 운송수단별로 각기 다름. 해상 운송의 경우 선적 전 24시간, 벌크물품의 경우 유럽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함. 항공운송의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은 출발 전,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은 도착 4시간 전에 신고해야함. 육상운송의 경우 유럽의 첫 번째 도착지에 이르기 1시간 전까지 신고해야함
- ❖ ENS 데이터 제출 의무자는 항공사나 선사(Carriers)이며, 포워드 등은 항공사나 선사의 동의를 거쳐 간략 ENS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음.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ross Weight), HS CODE,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 등이며, 유럽 공동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s’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가 있음. 물품명세 기재 시 ‘일반 화물’, ‘전자제품’등과 같은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정확한 용도에 맞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함

라. 도착 통보

- ❖ 화물의 도착과 함께 운송인 혹은 대리인이 첫 번째 세관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도착의 통보는 사전적하목록제출제도(ENS)에 따라 제출한 목록과 화물이 반드시 일치해야함. 이는 안전과 위험요인을 제어하기 위함으로 세관에서 사전적하목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함.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금지 조치가 가능함. 도착 통지는 유럽의 회원국에 의해 구현되며, 법안은 세관이 속한 국가의 시스템을 따름

마. 수입신고

- ❖ 신고 대상은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 : Non-community goods)로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물품임.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인이며, 수입 신고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신고 방식을 따름

- ❖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과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이 있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수이며, 원산지증명서, 기타 요건 구비 증명자료가 제출 서류임. 제출시기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신고인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세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 신고 이후에 제출을 허용함

바. 통관 서류 심사 / 물품검사(통관심사)

- ❖ 유럽 통관 시 필요한 필요 서류는 Tax Authority 등록인증서 사본 1부, 세관 관세평가서, 관세, 세관수수료, 부가세 영수증, 세관 신고신청서,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신고신청서는 통관 신고인이 작성하고 서명 및 봉인은 수입업자가 하여야 함
- ❖ 세무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함. 이때,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함. 세관당국은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는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이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물품 선별 검사를 실시함.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역내 운송 허가를 통지함

사. 화물 반출

-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관세 영수증과 B/L원본을 수입업체 건네줌. 통관심사와 관세납부를 마친 제품은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며, 수입업자의 공장 혹은 창고로 이동하게 됨. 유럽은 28개국 유럽국가로 구성된 단일 시장으로 역내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어 있으며 역외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에는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다시 낼 필요가 없음

2. 관리 법률체계

가. 대 EU 기본 수출·입 관련 법

- ❖ 2013년 7월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를 포함 2016년 현재 총 28개국이 가입된 유럽연합은 각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출·입 법규를 통일하여 동일한 통관 및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EU 국가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건(서비스 포함)은 EU 회원국에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공표한 수출입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 한편 유럽연합은 가격 담합 및 덤핑 및 시장 독점 등과 같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금지하고 있음
- ❖ EU 28개 회원국 상세는 아래와 같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멜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나. EORI 번호(EU 인증 수출자번호)

-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는 수출입업자의 세관등록 번호를 의미함
- ❖ EORI 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임
- ❖ 관세 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취득 할 수 있음
- ❖ EU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받게 됨

다. 상품 분류 변경 사항

❖ 개요 : EU 집행위는 상기 Regulation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품을 분류 하였으며 동 규정은 관보게재일(2014.7.16)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됨

❖ 상세내용

- 첫 번째 칸에 묘사된 상품은 두 번째 칸의 CN 코드로 분류됨

상품명세	분류(CN code)	분류이유
<p>누르스름한 가루로 채워진 무색의 캡슐로 소매판매용 플라스틱 병에 캡슐 60개 단위로 라벨링 되었으며 다음 성분을 함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코사민 염산염(300mg) - 황산콘드로이틴 - 메틸 술폰닐 메탄 - 소량의 아스코르브산 에테르 (비타민 C) 	<p>유지방, 자당, 아이소글루코오스, 포도당 및 전분을 포함하지 않거나, 중량에 의해 1.5% 이하의 유지방, 5% 이하의 자당 또는 아이소글루코오스, 5% 이하의 포도당 또는 전분을 포함한 조제 식품 (2160 90 92)</p>	<p>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2106, 2106 90, 2106 90 92에 의해 분류됨</p> <p>일일 섭취량을 고려할 때 예방 또는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CN 코드 3004, 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음</p> <p>상품은 일정량 형태의 조제식품으로서 식품보충제로 목적으로 사용이 됨으로 CN 코드 2160, 조제식품으로 분류됨</p>
<p>아래 성분으로 구성된 냉동과일(무게 비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 55 - 바나나 20 - 파인애플 15 - 블루베리 10 <p>상품은 믹스기로 혼합할 수 있는 조각 형태의 냉동과일로 봉투에 담겨져 있음</p>	<p>설탕이 중량의 13%를 넘지 않는 초분류 딸기 (0811 10 90)</p>	<p>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0811, 0811 10, 0811 10 90에 의해 분류됨</p> <p>상품은 여러 종류의 냉동과일 혼합물로 딸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p> <p>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0811 10 90, 딸기류로 분류됨</p>
<p>소매판매용 200ml, 5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화나트륨(0.9%) - 멸균수 <p>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캡과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p> <p>라벨에 따르면 상품은 비상시에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세척용으로 사용</p>	<p>기타 먼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따로 분리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 (3307 90 00)</p>	<p>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p> <p>상품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이 되어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p> <p>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됨</p>

상품명세	분류(CN code)	분류이유
<p>소매판매용 2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산나트륨(1-5%) - 인산칼륨(1%) - 멸균수 <p>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캡과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p> <p>라벨에 따르면 제품은 비상시에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세척용으로 사용</p>		<p>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p> <p>상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구성요소의 분리체가 아니므로 CN코드 2835, 인산염으로 분류되지 않음</p> <p>상품은 화장품이나 화장품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이 되어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품용으로 분류</p> <p>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품용으로 분류됨</p>
<p>조리된 건조국수(약 65g), 조미료(3.4), 식용유(2g), 건조채소(0.8g)로 구성된 상품</p> <p>상품은 국수 조제품으로 소매판매용으로 포장</p> <p>라벨에 따르면 상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추가해야 함</p>	<p>기타 건조 파스타 (1903 30 10)</p>	<p>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1902, 1902 30, 1902 30 10에 의해 분류됨</p> <p>국수가 상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CN 코드 2104, 스프로 분류되지 않음</p> <p>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1902, 파스타로 분류됨</p>

3. 통관수속

-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 신고서 작성
- ❖ 수입 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관세를 납부 후 통관 완료 됨
-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 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출항 → 입항 → 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4. 화물의 통관

가. 수입 신고서의 종류

-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함
-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나. 온라인 통관제도

- ❖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청 가능

다.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 제3국에서의 수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었을 때도 적용됨
- ❖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가 국가에 제공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세금과도 관계가 있음
-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를 넘어야하며, 1개 또는 2개의 감면 부가가치세율(단 5%는 넘어야함)을 각국이 지정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6.01) ■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0 / 15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 / 13
스페인	21	10
프랑스	20	5.5 / 10
크로아티아	25	5 / 13
아일랜드	23	9 / 13.5
이탈리	22	5 / 10
사이프러스	19	5 / 9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8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 13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20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10 / 14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출처 : European Commission

5. 원산지 규정

가. 개요

- ❖ 한-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러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임
- ❖ 특히 한-EU FTA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방식이나 해외가공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인증 수출자

- ❖ 6,000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28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의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신고가 가능함
- ❖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EU 수입 통관 시점 2년 내에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음

다. 원산지 결정기준

- ❖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함
- ❖ 통상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구분하고 있음
- ❖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 함
- ❖ 또한 위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됨

1) 완전생산기준

- ❖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사업품이 주로 해당 됨

■ 완전 생산 기준 ■

구분	내용
광물성 생산품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
식물성 생산품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산 동물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 영역에서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배타적으로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2) 실질변형기준

❖ 세번 변경 기준

- 세번 변경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의 관리 중요, 이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거나 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그 증빙을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기준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음

❖ 가공공정기준

-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하므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6. 구비서류

가. 수입 통관 필요 서류

- ❖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가 구비되어야 함
-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 되어야 함
-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식품의 관세분류번호(TARIC CODE = HS CODE /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 운송회사 혹은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등은 전담 업체에서 준비함
- ❖ 수입통관신고는 수입금액이 만 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며 DV1라고 불리는 서류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통관시 제출해야함
- ❖ 커미션이나 저작권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되어야하며, 만유로 이하 또는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제외되기도 함

나. 수입 금액별(6,000유로 기준) 서류작성

1)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 ❖ 판매가가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협정 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함
- ❖ 원산지 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e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EXPORTER SIGNATURE AND NAME

- (1)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남겨둠
- (2) 원산지 입력

2) 6,000유로 이상인 경우

- ❖ 수출국가에서 인증한 수출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출자 관리번호와 함께 위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7.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 포장제품

1) 통관 구비서류

- ❖ 일반 포장제품 통관 시에도 선하증권(B/L), 인보이스(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 경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를 준비해야 함
-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2) 물품 검사

-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함
- ❖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는 통관 절차 때 지불
-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 함

3) 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

□ 상품분류 번호

-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 됨
- ❖ EU 28개 회원국은 모두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 됨
- ❖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 ❖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 원산지 규정

-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 관세부과액

-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 됨
- ❖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 개발비 등) 들도 있음
-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됨

나. 건강식품

1) EU, 건강식품과 관련된 광고문구 규제화

- ❖ EU는 '12년 12월부터 건강식품과 관련 식품 라벨이나 광고, 홍보물에 집행위가 승인한 카피문구만 사용하도록 정하여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식품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12년 5월 16일 EU 집행위는 건강식품의 라벨과 광고 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피문구(222개)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 EU가 건강식품 관련법(1924/2006)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피문구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함(1924/2006법에는 집행위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마련하도록 명시했음)
-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첫째 2008년에 유럽 식품청(European Food Authority)이 각 회원국에서 접수한 카피문구가 4만4000개나 돼, 이를 일차적으로 추린 후 4600개의 합당성을 심층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EU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음
- 식품업체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222개의 카피문구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될 수 있음

2)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내용

- ❖ 카피문구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물질이 인체 성장발육과 발달, 일정한 인체기관의 기능에 작용하는 역할
- ❖ 심리적 또는 행동심리적면에서의 기능
- ❖ 살 빼는 기능, 체중조절기능,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기능, 포만감 강화 또는 섭취 열량 감소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입증에 근거를 두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들임
- ❖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칼슘은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다
 - 소금섭취를 줄이면 정상적 혈압 유지에 좋다
 - 식물스테롤(plant sterols)과 식물스타놀(plant stanols)는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준 유지에 좋다(이 두 식물은 마가린과 야구르트에 사용됨)
 - 호두는 혈관의 신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오메가3 알과 리노레닉산은 혈액의 정상적 콜레스테롤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준다
 -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에 좋다
 - 비타민 C는 정상적 신경 기능에 좋다 등임

□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영양(nutrition)관련 대표적인 허용 단어는 아래와 같음

주요 허용단어	설명
low energy	40kcal(170KJ)/100g 이하의 일반식품 20kcal(80KJ)/100ml 이하의 음료(액체) 식품
Energy-free	4kcal(170KJ)/100g 이하의 식품 0.4kcal(1.7KJ), 6g 대략 한 티스푼 이하의 감미료 함유
Low fat	3g/100g 이하의 지방 함유(일반식품) 1.5g/100ml 이하의 지방 함유(음료/ 액체 식품)
Fat-Free	0.5g/100g 또는 100ml 의 지방 함유 식품
Low Saturated fat	1.5g/100g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일반식품) 0.75g/100ml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음료/ 액체 식품)
Saturated fat-Free	0.1g/100g 또는 100ml 이하의 포화지방(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Low Sugars	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Sugars-Free	0.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Low Sodium/Salt	0.12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dium-Free or Salt-Free	0.005g/100g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urce of fibre	최소 3g/100g 또는 1.5g/100kcal 의 섬유질 포함 식품
High protein	제품의 최소 20%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 식품
그 외	High XXX, Contains XXX, Reduced XXX => 영양소의 이름을 뒤에 넣어 사용가능(예: High of Vitamin)

3)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

❖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 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사용은 금지됨

❖ 금지된 카피문구의 예

- 그린 티(녹차)는 정상 혈압유지를 도와준다
(Green tea helps maintain normal blood pressure)
- 로얄 젤리는 면역성, 원기향상에 좋다
(Royal jelly benefits the immune and/or vitality).

- 비타민과 미네랄과 혼합된 타우린(활력음료수에 함유)은 정신건강에 좋다
(Taurine, when combined with vitamins and minerals, boosts mental performance)
-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좋다
(Glucosamine helps maintain joints) 등임

4)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집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제출

- 업체는 해당 판매시장 회원국 당국(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 식품안전 검사 기관 AFSCA)에 과학적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회원국 당국은 2주 내로 EU 식품청에 신청 건을 통보
- EU 식품청은 이를 여타 회원국과 집행위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
- 집행위는 EU식품청의 의견을 조회한 후 특히 중소기업에는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평가서류 준비와 관련 조언과 기술적 방법을 제시함

❖ 유럽식품청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개월 내로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함

❖ 신청서 제출집행위는 유럽식품청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집행위 결정 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되면 즉시 신청자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함(기존 포지티브리스트에 승인받은 리스트 추가)

❖ 유럽식품청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신청자에 통보함

❖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자명, 주소
- 신청 대상의 영양소 또는 물질, 또는 식품, 식품 카테고리 및 특성 서술
- 업체 자체 연구결과 사본
- 업체가 카피문구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원할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동반 제출
-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외부 연구 결과 사본
- 카피문구제안과 필요시 특별 사용 조건
- 신청이유 요약 등임

5) 시사점

-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 포지티브 리스트와 관련 카피문구와 사용조건에 관한 집행위 사이트
<http://ec.europa.eu/nuhclaims/> 참고
- ❖ 유기농(Organic) 식품
 - 2014년 7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양자간 유기농 식품 동등성 협의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마침내 2015년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서로도 EU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협정을 발표함(관련 : EU 2015/131 of 23 January 2015)
 - 가공처리된 식품 중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가 쓰인 것들에 한해서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수 있는 유기농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가공처리된(processed) 식품 예	비가공처리(unprocessed) 식품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혼합 식품(견과류, 말린 과일, 냉동 야채) - 치즈, 절인고기, 소시지, 베이컨 - 아기용 음식, 영아용조제분유 - 저온 살균한 제품(우유, 과일주스) - 커피, 차 - 꿀, 초콜렛, 와인,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과일 및 야채 - (다른 채소류와 혼합되지 않은)냉동 콩류 - (다른 과일류와 혼합되지 않은)말린 망고

- EU에 수입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에는 한국 또는 EU의 유기농 인증 마크가 라벨(또는 패키징)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원산지, 제조사 이름, 연락처, 포장지 회사 정보, 유기농 인증서 발급 기관명 그리고 인증서 번호가 라벨에 기입되어야 함

EU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	로고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유기농 인증 마크 및 인증번호 기입 - 제 3국가(Non EU product)에서 생산되었음을 언급

- 다양한 유기농 식품의 구매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판매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산 유기농 제품의 활발한 수출을 위해서는 상품 개발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요구됨

다. 동물성 가공식품

□ '17년 EU 수입제도 변경 내용

- ❖ 2017년 1월 수입분 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 품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
 - 관련규정 : 「EU Commission Decision 2016/1196」 동물성 성분 포함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검사증 필요유무에 대한 규정
- ❖ [변경요약] 수의검사 제외품목 변경내역
 - 육류추출물, 육즙 :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 유지방, 계란 : 전체 20% 미만 포함일 경우만 가능
- ❖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EU 혹은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조건이 있어 육류추출물 포함제품의 정식통관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가조사를 통해 추후 공유예정

■ 수의검사 제외규정 변경내용 원문 ■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u>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u> 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제외
초콜릿 과자류(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참고 1]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사항(영국 Port Health 공문)

새롭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이 새로운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됨

변경내용 및 수입조건을 확인하여 비용과 손실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

유럽연합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7/275(이하 결정 'Decision')는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결정(Decision) Annex II 에 나와있는 식품 목록을 제외한 모든 육류 및 육류제품은 수의학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최근 Annex II 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으로 대체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될 예정임.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가?

전체 변경 내용: <http://ahvla.defra.gov.uk/documents/bip/ovs-notes/2016-20.pdf>

다음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들임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예: 면류 및 옥수수)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은 육류 제품에 포함될 것임.
 - 이는 특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혹은 육류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인스턴트 면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과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 제품) 모두 해당 됨
 - 해당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육류제품 혹은 복합식품 증명서 및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현재 수입되는 면류, 옥수 및 육류 분말 중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음

-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 충전이 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젤라틴에 동물성일 경우)은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임.
 -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젤라틴 수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승인된 제 3국가의 승인된 젤라틴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
 - 요구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함
 - 수입 시 젤라틴에 대한 보건 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동봉되어야 함
 - 기타 수입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경고사항: 현재 중국에는 승인된 젤라틴 업체가 없으므로, 중국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의 동물성 성분 젤라틴 캡슐 수입이 불가능할 것임
 - 필요조치: 아래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승인된 업체 목록 확인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충진된 젤라틴 캡슐

- 충진된 젤라틴은 동물성 가공제품(예. 어류 기름 캡슐은 어류 제품으로 분류) 혹은 함유성분에 따라 복합식품으로 평가함
- 수입하고자 하는 충진된 젤라틴 캡슐의 젤라틴이 EU 승인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연락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아래 동식물 건강국 국제무역센터(APH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에 연락처 정보 확인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835/contacts-international-trade.pdf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유기 화합물은 처음으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될 것임. 특히 크레아틴(creatine), 시스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이 언급됨
- 필요조치:
 - 본 결정 'Decision' 제 29장에 명시된 요구조건 세부사항 확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D1196&from=EN#page=12>
 - 기타 규제품목에 대한 수입조건 확인은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문의 적은 양(총 20% 미만)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반면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성분은 EU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매용 식품 보충제

-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성분(캡슐의 동물성 성분 포함) 총량이 20% 이상일 경우, 수의학적 검사 대상임. 해당제품은 유럽연합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6/759에 명시되어 있는 고(高)정제 제품 보건 증명서(the health certificate for highly-refined products)를 동봉해야 함
- 필요조치: 고정제 제품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조
<http://www.porthhealth.eu/import-process-highly-refined-products>

◆알코올성 음료

- 달걀, 크림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는 복합식품일 가능성이 높음. 복합식품의 수입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함
-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이 함량하고 있는 달걀 및 유제품도 달걀 및 유제품 성분에 대한 잔류량 지침 승인을 받은 국가의 생산품이어야 함

Annex II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품목 목록 변경사항

아래는 기존과 개정된 Annex II의 비교표임. 개정본의 CN코드별 제품 구분과 수의학 검사 면제 대상 범위 확인 필요
** 즉, 완전히 조리되었거나 혹은 성분 전체가 열처리 되어 모든 원재료가 변성된 제품.

Decision 2007/275/EC의 Article 6(1)(a)(i) 참조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은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과자류(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은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은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은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참고 2]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이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농산품을 함유하는 인체 섭취용 식품을 일컬어 복합식품이라 한다.

복합식품은 아래 과정을 통해서 제조될 수 있다:

- 미리 가공된 육류에 식물재료를 결합한다(예를 들면, 비프 샌드위치); 또는
-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동안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다(예를 들면, 조리된 새우 스프링롤).

동물성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거나 인체 섭취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식품은 복합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경고 -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육가공품**과 **복합식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육가공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다 - 동물성 가공식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식물재료가 동물성 식품의 **제조과정의 일부**로 요구되거나 이러한 동물성 식품에 **어떤 특성을** 부여할 경우 복합식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는 농후제로 작용하거나 장식용이나 토핑으로 제공되는 설탕이나 풍미의 가미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 소스의 참치는 가공 수산물로 간주되지만 복합식품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 소스는 참치 통조림 **제조과정의 일부**(가공하기 전에 캔에 액체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음)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특히, 맛과 점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용 가능한 추가 지침이 있고 아래에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가공 육제품은 복합식품과는 수입요건이 다르다.

복합식품이 주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일반적으로 동물성 재료를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주의검역으로 보호된다. 복합식품은 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제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 결정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 주의검역에서 면제된다(위원회 결정 2007/275의 부록 II를 클릭하면 Europa 웹사이트가 열린다).

주(註) - 냉동 복합식품

최종 복합식품은 분명히 육제품과 식물재료의 결합 후 동물성 성분을 **변화**(물리적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조리되었거나 열처리된 것이다.

저온살균과 같은 가벼운 열처리는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내용물의 성질이 변했는지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중심온도 추이에 따른 조리과정을 보여주는 생산자 도면과 같은 증거가 요구된다.

면제 복합식품 - 제6조

복합식품이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의검역에서 면제된다:

1. 어떠한 유제품 조각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전체 동물성 내용물이 중량으로 50% 미만이다.
3. 생산품이 주위온도에서 저장 안정성을 나타내거나 냉동시 제조과정에서 재료 전체를 완전히 익히거나 열처리했기 때문에 미가공 제품의 성질이 변했다.
4. 복합식품이 인체 섭취용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5. 복합식품이 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밀폐 처리되었다.
6. 복합식품이 상업문서를 수반하고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상업문서와 표시가 복합식품과 그 성분의 성질, 수량, 포장 수, 원산지 및 제조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록 II에 수록된 면제제품

수의검역 면제 제품은 아래와 같다:

- 비스킷
- 빵
- 케이크 - 카스텔라, 과일케익 등(아래 '주' 참조)
- 초콜릿
- 과자(사탕 포함)
- 소량의 유제품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 포장된 식품보충제 및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또는 키토산을 포함하는 식품보충제(캡슐형 순수 어유는 면제되지 않음)
- 어육으로 채워진 올리브
- 유제품과 혼합하지 않았거나 유제품으로 채우지 않은 파스타와 국수
- 고기추출물, 고기농축물, 동물성 지방, 또는 어류 오일이나 분말이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국 건더기와 향료.

*주: 케이크를 구운 후 축산물(예를 들면, 크림)이 첨가되면 최종제품은 더 이상 수의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스킷, 빵, 케이크, 과자 등이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굽는 과정이 동물이나 공중보건 위험요소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운 후 축산물이 첨가되면 복합식품은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유제품을 함유하는 복합식품

유제품을 함유하는 생산물은 조항 6(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제품이 승인된 제3자로부터 공급되고 명시된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 규정(EU) 605/2010(발표 당시 최신 통합버전으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현행 목록이 들어 있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의 수입

당기관에서는 탁송물이 수의검역 대상인지 결정하기 위해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이에 따라 송장 사본, 포장목록 및 선하증권 사본이 요구된다. 해당 복합식품이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는지(따라서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지) 확실할 경우에는 비율과 원산지를 포함해서 각 동물성 재료의 상세정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의 첨가 및 뒤이은 열처리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합식품(이상적으로는 공정흐름도 형식) 제조과정의 세부정보(특히, 상세한 적용시간과 온도 및 달성된 중심온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수출업자나 제조업자가 제공해야 하고 해당 탁송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동물성 재료는 EU 회원국이나 EU에 동물성 생산물 자체를 공급하도록 승인을 받은 비회원국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각 동물성 재료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관련 제3국 목

록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동물성 재료의 승인된 잔류농약 계획을 수립한 EU 비회원국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동물성 재료는 EU 승인 시설의 것이어야 한다. 승인된 잔류농약 관리 계획을 수립한 국가 목록은 [위원회 시행결정 2015/1338\[PDF\]](#)에 수록되어 있다.
수의검역 밖의 복합식품의 경우, 재료의 원천과 관련된 요건을 점검하는 일은 국내 지방당국의 책임이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수입요건

규정 28/2012의 요건이 적용되는 수의검역 대상 복합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위생 증명서

복합식품이 아래 요소를 함유할 경우 [Regulation 468/2012](#)에 규정된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 가공육
- 가공 유제품(냉동을 요함)
- 저장이 안정적일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 50% 이상의 가공 난제품.

이 식품이 50% 이상의 기타 축산물(예를 들면, 젤라틴, 꿀, 콜라겐)을 함유할 경우, 순제품에 적용되는 EU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공육제품 내용물은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승인된 잔류농약관리계획이 있는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한다는 일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분

[규정 28/2012](#)에 의하면 동물성 재료는 복합식품을 제조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이 낮은 동물위생위험 국가가 다른 저위험 제3국이나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해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저위험국은 EU를 포함한 다른 저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저위험국은 고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 고위험국은 다른 나라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없고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육제품 함유와 관련해서 복합식품 원산지 국가가 EU에 처리 A([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2 참조. 처리 A는 저위험국을 의미함)를 거친 육제품만 수출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처리 A를 거친 육제품만 EU에 수출하도록 승인된 다른 국가나 EU에서 공급된 육류로 제조할 수 있다(처리 A의 의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4 참조).
- 유제품 함유와 관련해서 복합식품의 원산지 국가가 EU에 유제품을 수출하도록 승인되었고 [위원회 규정 605/2010](#)의 칼럼 A(날것)나 칼럼 B(저온살균)에 속하는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같은 칼럼의 다른 국가나 EU의 유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복합식품 제조국이 칼럼 C에만 속할 경우, 이러한 유제품 함유물은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동일국가나 EU에서 들여온 것이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들여올 수 없다. 예를 들면, 태국([규정 605/2010](#)의 칼럼 C에만 속함)에서 공급되고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이 칼럼 A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불가능하나 EU산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참고 3] FAQ

우유분말과 식물성 기름으로 제조되는 아이스크림 과자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입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수의검역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복합식품은 냉동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검역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최종 복합식품은 요리되었거나 우유분말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열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과자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혼합물의 저온살균은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육류파이(조리된 육류 함유)
- 통조림 참치 샐러드(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채소를 곁들인 참치 함유)
- 닭고기 카레(소스에 채소와 조리된 닭고기의 결합)
- 50% 이상 조리된 새우를 함유한 새우 스프링롤
- 비조리 저온살균 치즈를 함유하는 피자(냉동과 조리되지 않은 최종 생산품을 요함)
- 저온살균 크림층이 있는 과자(냉동과 비조리 크림 가미 최종 생산품을 요함)

수의검역을 받지 않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50% 미만의 치즈와 비육류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피자
- 50% 미만의 새우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새우 스프링롤
- 50% 미만의 저온살균 계란을 함유하는 마요네이즈

복합식품이 아니면서 식물재료 함유 육가공품인 식물재료를 함유하는 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미가공 육류를 함유하는 비조리 육류파이(날고기이므로 복합식품이 아님)
- 빵가루를 묻힌 생새우(새우가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견과류를 가미한 꿀(꿀이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기름에 담긴 참치 통조림(제조에 필수적인 식물재료)
- 칠리 마리네이드에 담긴 조리된 참치 살코기(마리네이드로 참치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 가미)
- 조리된 빵가루 묻힌 새우(빵가루로 새우에 특성 부여; 새우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연육/계맛살(때때로 소량의 식물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어육에 특성을 부여함)
- 빵가루를 묻힌 조리된 해덕(빵가루를 묻힘으로써 어육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반죽 치킨 너겟(반죽으로 치킨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포도당이나 소량의 양파가 함유된 다진 쇠고기(포도당/양파로 다진 쇠고기에 특성을 부여함)
- 딸기 요구르트(딸기로 요구르트에 풍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부여함)
- 과일 고명이 있는 우유 디저트(과일 고명으로 우유 디저트에 향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가미함)
- 반죽된 조리 치즈(예를 들면, ‘파니르 과파’)(반죽으로 치즈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치즈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어육 함유율이 10%이고 기타 재료로 설탕과 물을 사용한 생선 소스. 이러한 제품은 수산물이다(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관련 식물재료가 없음). 수산물로 수의검역을 받는다. 50% 규칙은 복합식품에만 적용된다.
- 물과 2% 탈지분유 및 설탕을 함유하는 야쿠르트와 같은 요구르트 음료. 이러한 제품은 유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도 없다.
- 인도산 굴랍자문, 라스굴라 및 기타 유사 통조림 제품. 이러한 제품은 캔의 시럽과 코티지 치즈볼(@5%)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가 없는 유제품이므로 인도에서 수입할 수 없다.

8. 통관시 유의사항

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기 강화 요망

- ❖ EU는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ing) 법규를 적용
- ❖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함
- ❖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되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리콜조치 적용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1.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2.
 <p>The image shows a label for 'Fruitmoes met appel en banaan' (Fruit puree with apple and banana). A red box highlights the allergen information: 'Allergenen informatie: bevat gluten, melk, eieren, soja, sesamzaad, zuivel, zwavel'. There are also icons for 'vegan' and 'halal'.</p>	 <p>The image shows a label for 'Huls Groninger Metworst' (Huls Groninger Sausage). A red box highlights the allergen information: 'Allergenen informatie: bevat gluten, melk, eieren, soja, sesamzaad, zuivel, zwavel'. The label also features the Huls logo and a picture of people.</p>

나. EU 등 전 세계적으로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더욱 강화 예정

- ❖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라벨링 규제 개선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에 제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임
- ❖ 한국기업이 유럽 식품시장 진출 확대 위해서는 정확한 Allergen 표기 필수

- ❖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 식품의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경고 및 리콜 조치와 레이블 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 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 이미지 하락과 Allergen 성분 미 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됨
- ❖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 Allergen 성분 미 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Allergen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발생
 -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임
- ❖ 유럽에서는 Allergen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욱 넓게 퍼져 있고 규제도 더욱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함

다. 통관부서 연락처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http://www.bmg.gv.at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ministero/sezMinistero.jsp?label=uffici
벨기에	http://ec.europa.eu/food/animal/bips/bips_contact_en.htm 문서참조(이하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리투아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불가리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룩셈부르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사이프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라트비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체코	http://www.svscr.cz	몰타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독일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네덜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덴마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폴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에스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포르투갈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그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루마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페인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웨덴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핀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베니아	http://www.vurs.gov.si/en/veterinary_administration/organisation/border_inspection_posts/
프랑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바키아	http://www.svssr.sk/sk/adresy/Hranice.asp#1
헝가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영국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아일랜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위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노르웨이	http://www.mattilsynet.no/english/import_export		

라. 농식품 對 EU 수입 거절시 대응요령

- ❖ 신속한 대응 필요
- ❖ 수입품에 대한 농식품 검역을 규정하는 EU규정 882/2004 제5장(Chaper 5)의 54항 [Article 54-(3)]은 회원국이 기업에게 항소 절차와 기한 등을 안내할 의무를 명시함
- ❖ 회원국 단위세관, 검역당국 등이 EU규정에 명시된 절차(샘플링, 테스트링 법, 항소절차 안내여부)를 따랐는지도 요청해야 함
- ❖ EU의 유해물질 발견 시 조치
- ❖ 아플라톡신 등 일부물질은 집행위 규정 669/2009에 견과류 내 요주의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견과류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 시 아플라톡신 검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 ❖ EU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아플라톡신 관련 중국, 가나, 인도 등 다수 적하물이 수출자에게 재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 따라서 관련 수입품은 특별한 주의가 요청됨

마. 물류보안 인증제도

-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미국이 반테러 미·관 협력제도를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이후 세계세관기구(WCO)와 국제표준기구(ISO) 등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WCO의 제도를 수용한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기업)에 대해 보안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통관 감사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 함

❖ EU의 AEO 가이드라인은 Part 1, Part 2, Part 3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의 심사와 혜택, 국제공급사슬과 보안개념, AEO 지원서 제출지역,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 Part 2는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인증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과 각 평가 기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언급
- Part 3은 공급사슬에서의 활동주체 즉 제조기업, 수출업자, 포워드, 창고운영자, 운송사, 관세사, 수입업자 등이 AEO 인증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설명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

구분	제도	시행시기
국제관세기구	WCO Framework	2005.06
ISO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Chain	2007(PAS : 2005)
미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002.04
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08.01
싱가포르	STP(Secure Trade Partnership)	2008.10

※ 참고자료

□ 웹사이트

- ❖ EU 제 13조 조항 원문

<http://ec.europa.eu/nuhclaims/resources/docs/euregister.pdf>

- ❖ 유럽연합 수입제도 규정

<http://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import-into-eu/>

- ❖ 유럽연합 통관제도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 ❖ 유럽연합 수출입 절차 및 정책 <http://ec.europa.eu/trade/>

- ❖ 유럽연합 유기농 제품 관련 공식 웹사이트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

- ❖ 한-EU 오가닉 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trade/non-eu-trading-partners/countries/korea_en.htm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 관련 책자

-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

관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저자 : 한상필)

- ❖ 주간 EU 동향(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missiontoeu.mofa.go.kr/korean/eu/missiontoeu/eu/news/index.jsp>

- ❖ EU 정책 브리핑 3차 개정판, 2016 /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 일반

1. 개요

-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식품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함
-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2. 농식품 검역

-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은 농산물의 경우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 농산물의 경우 상기 검역필요 품목은 반드시 검역을 필해야 하며 식품, 어류의 경우 위생검역증(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3. 화훼류 검역

- ❖ Directive 2000/29/EC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특정 식물에 대해 병충해 방지 및 수입국에서 사전에 검역 및 안전한 식물이라는 내용을 담은 식물위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함(우리나라에서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발급함)
- ❖ 병충해를 일으키지 않은 안전한 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물위생검역증이 면제되며 그 밖에 소량의 식물, 비판매용, 연구용(실험용), 테스트용 등으로 사용될 목적에도 면제될 수 있음
- ❖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유럽연합 각 국가에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 ❖ 화훼류 또는 목공품(종이제품 제외) 수입시 포장에 쓰이는 나무 패키징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에서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음

- 관련 : Directive 2005/15/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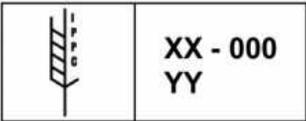
- FAO에서 2002년 제정한 식물위생 표준 법률 ‘ISPM no. 15’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부터 발효됨

- 제품 겉면을 포장하는 패키징 외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받침대, 팔레트 등 모두 해당됨

- 이러한 EU의 방침은 병충해와 같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재 박스가 유럽 회원국 도착 후 만일에 있을 해충 및 전염병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배경에 있음

-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ISPM no. 15’의 절차에 따라 고온에서 소독된, 껍질을 벗겨 만든 나무 또는 ‘ISPM no. 15’ 도장이 패키징에 찍힌 것이어야 함

- 한편 패키징(나무)상자의 두께가 6mm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며, 나무 상자 전체가 풀이나 합판, 판자(veneer) 등으로 가공된 것은 금지됨

ISPM15 도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코드로 구성됨(국가, 생산자, 사용 처리된 방법) -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코드로 사용된 목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되었는지 쉽게 알려줌

4. 검역 인증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 EU 규정 1788/2001에 따라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 제3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이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tariff number)
- ❖ 이 검역인증서를 유럽 연합 지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품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Port health authority(PHA)에 제출함
- ❖ PHA는 이 검역인증서를 Defra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 PHA의 승인 사인과 도장은 검역인증서가 정확하고 제품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유기농 제품이 통관하기 전에 필요함
- ❖ 또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PHA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5. 최근 검역 근황

가. EU,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 업데이트

- ❖ 2016.6 유럽위원회에서는 EU에 수입된 채소 및 과일류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의 border check 결과(각 회원국의 세관, 검역소에서 검역, 위생 등의 문제로 수입 불허 또는 보류된 건들 결과 정리)에 대해 발표하며 위생검역 강화 대상 아이템을 추가 또는 해지함
- ❖ 약 100,000건들에 해당하는 건들이 검역 대상이었으며 이중 약 11,000건들은 추가의 검사(실험실에서 샘플링 검사 등)가 행해졌음. 2014년은 예년에 비해 수입 채소 및 과일에 대한 검사가 더욱 증가한 해로 기록, 앞으로도 각 회원국의 검역 검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
- ❖ 농약 과다 검출, 곰팡이 및 세균 검출 등의 문제가 반복 또는 위험 물질(재료) 포함된 식품의 경우 위생검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기존의 검역대상 리스트에 있었던 식품 중 해지 및 추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해지된 품목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추가된 품목 (2016년 6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포도(아프가니스탄) : 과거 ochratoxin A 검출 - 아몬드(오스트레일리아) : 과거 aflatoxins 검출 - 비터멜론, 가지(도미니카 공화국) : 과거 농약 잔류 허용치 초과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즐넛(조지아) : aflatoxins - 땅콩(마다가스카르) : aflatoxins - 팜유(가나) : sudan dyes - 레몬(터키) : 농약잔류 <p>* 아래의 품목은 기존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추가적으로 위생증명서 제출 필수 품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장나뭇잎(인도) : 살모넬라 - 땅콩(브라질) : aflatoxins - 고추, 옥두구(인도) : aflatoxins - 옥두구(인도네시아) : aflatoxins

❖ EU에서는 식품의 농약 잔류치, 식품 첨가물, 세균(해충)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사전에 제품별 요구하는 내용(예: 최대 농약 허용치)에 대해 확인해야 함

나. 식품에 포함된 아플라톡신(Aflatoxins)에 대한 검역 강화

- ❖ 곡물의 곰팡이로 인한 독소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생,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은 만들어내는 균임
- ❖ 땅콩, 견과류, 옥수수, 쌀, 무화과, 각종 건조식품 및 향신료, 날채소오일, 코코아 등에서 발견되며 그 위험성을 인지하여 호주산 아몬드, 브라질산 땅콩, 수단산 땅콩 등이 현재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음
- ❖ 견과류 및 씨앗류, 곡류에서 쉽게 퍼지는 아플라톡신에 대해 한국산 식품(곡류, 건조식품 등)의 수출 시에 곰팡이오염 및 농약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1. 임산물 및 화훼류

- ❖ 유럽연합에서 ‘긴급히 주의가 필요한(위험)종’으로 지정한 것들은 아래와 같음
 - *Anoplophora glabripennis*(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하늘소 일종) : Decision 2015/893/EU, 위험종으로 지정
 - *Diabrotica virgifera*(옥수수근충)
 - *Epitrix*(벼룩의 일종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견)
 - Pinewood nematode(소나무 선충) : 남유럽(포르투갈, 이탈리아, 남프랑스)에서 나타남
- ❖ 그 외 유럽연합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럽식품안전청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종으로 소나무 줄기마름병(*Gibberella circinata*), 밤나무 흑별(*Dryocosmus kuriphilus*)과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이 있음

가. 소나무 줄기마름병(*Gibberella circinata*)

- ❖ Directive 2007/433/EC
- ❖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으로 *Gibberella circinata*는 소나무와 더글라스 전나무(Douglas fir trees)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
- ❖ 유럽에서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소나무 줄기마름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 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오염된 씨앗, 목재로 만든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장식용 식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짐
- ❖ 이 *Gibberella circinata*에 감염된 나무는 느린 성장과 심각한 가지 손상이 특징임

- ❖ 이 해충의 영향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각할 수 있음
- ❖ 패널은 나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재빨리 유럽의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 이 해충은 천만 헥타르가 넘는 소나무 서식지역과 숲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충격은 막대할 수 있음
- ❖ 패널에 따르면 씨앗, 식물, 나무, 토양, 해충에 감염된 기계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해충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나. 밤나무 흑별(Dryocosmus kuriphilus)

- ❖ Decision 2006/464/EC(이후 2014/690/EU 개정됨)
- ❖ 밤나무 흑별은 아시아가 원산지이나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밤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밤나무 흑별은 가을에 나무의 싹에 알을 낳고 봄에 유충이 나뭇잎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이를 흑선충이라고 부르며 잎의 성장을 방해함
- ❖ 이 해충은 식물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밤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 밤나무 흑별은 감염된 밤나무를 다른 지역에 식재하면서 확산됨
- ❖ 이 해충이 이탈리아 북부인 피드몬트(Piedmont)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재는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밤나무 흑별이 발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 패널은 포르투갈 북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밤 생산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음
- ❖ 이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감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식품안전청은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다.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

- ❖ Decision 2015/789/EU
- ❖ 유럽연합에서는 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해충이라고 규정, 다양한 질병을 일으켜 농업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함
- ❖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10월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로 올리브 나무에 영향을 끼침
- ❖ 유럽연합에서 Directive 2000/29/EC를 통해 포도피어스병균을 매우 위험한 해충으로 지정하였고 각 회원국에도 본 해충이 유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의 세부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함
- ❖ 박테리아는 식물의 목질부에 거주하면서 매미나 작은 곤충들에 의해 전염되며 뿌리에서부터 나무 전체까지 퍼져 결국에는 종을 사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본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특별한 해결책은 현재 없다고 발표함
- ❖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된 포도피어스병균은 이러한 작은 벌레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 자두나무에서도 발견됨
- ❖ 현재 유럽연합에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이탈리아(Brindisi, Taranto 및 그 주변)로 최소 570,000 헥타르의 크기로 예상되며 올리브 나무가 주생산원인 본 지역에 해충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2. 시사점

- ❖ 유럽 식품안전청의 패널리 소나무 줄기마름병을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 또한 밤나무 흑별의 경우는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 따라서 향후 유럽으로 소나무 및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관련 제품 수출시 해당 해충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검역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최근 검역 현황

www.foodmanufacture.co.uk

❖ 유럽연합 임산물, 화훼류 수입관련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plant/index_en.htm

❖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emergency control’ 이 필요한 해충 정리

http://ec.europa.eu/food/plant/plant_health_biosecurity/legislation/emergency_measures/index_en.htm

❖ 포도피어슴병균(*Xylella fastidiosa*) 관련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346_en.htm

❖ 한국의 불법조업국(IUU) 해지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fo/index_en.htm

❖ 2016년 6월 기준 위생검역리스트 업데이트 정보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6R1024>

제 4 장 관세제도

제 1 절

관세제도 일반

- ❖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현재 양측의 3년차 철폐 품목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 되었으며 5년차 철폐 품목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
- ❖ 이미 양측의 많은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발효 5년 차가 시작되는 2016년에는 모든 품목(양허 제외인 특정 농산물 제외)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 상품 양허 결과 ■

(단위 : 억불, %)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 중	對EU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수입액	비 중
즉시(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년(B)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C)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 내(A)+(B)+(C)	10,538	93.6%	265	97%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10년	399	3.5%	3	1.1%				
10년 초과	169	1.5%	1	0.5%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자료 출처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www.fta.go.kr)

- ❖ 대EU에 수출하는 한국 공산품 및 임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5년 이내에 철폐
- ❖ 한편 2014년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본 협정은(기존 27개국 외) 크로아티아를 포함 총 28국에 적용 되도록 개정됨

농산물의 관세제도

❖ 농산물은 양측에 민감한 아이템임을 고려하여 쌀과 같은 중요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으로 예외적 취급)

※ 안전수칙(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경제 및 자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은의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관세 인사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맥아, 감자전분, 인삼, 설탕, 발효주정, 변성전분이 적용됨)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또는 5년내 완전 철폐로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함

- 즉시 철폐 : 음료(과거 33.6%), 간장(과거 7.7%), 면류, 김 등

■ 대EU 한국 농산물 수입시 관세 조건 ■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896	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파스타(숙을 채운 것, 기타), 위스키(기타), 식물성 액즙(기타), 젤라틴, 김, 기타공예품, 기타음료, 난초 등
3년	10	0.5%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텍스트린, 오렌지, 감귤, 잎담배 등
양허제외	39	1.9%	쌀, 쌀 관련 제품(우리 16개 세 번, EU 39개 세 번에 해당)
합계	2,064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출처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www.fta.go.kr)

❖ EU는 품목수 기준 98.1%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며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에 대해 예외적인 양허 제외 또는 시장진입가격제도(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가)를 적용함

※ 참고자료

- ❖ 유럽연합 TRADE(한-EU FTA 개요) : <http://ec.europa.eu/trade/>
- ❖ 유럽연합 FTA 정책 : <http://ec.europa.eu/trade/policy/>
- ❖ 관세율 검색(EU에 수입시) : <http://madb.europa.eu/madb/euTariffs.htm>
- ❖ 출처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A quick reading guide'(2010)
- ❖ EU의 무역(수출입) 보호 정책 :
<http://ec.europa.eu/trade/policy/accessing-markets/trade-defence/>
- ❖ 출처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2011)
-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한국어) : <http://www.fta.go.kr/eu/doc/2/>

제 5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일반사항

가.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 ❖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법 Regulation(EU) No 1169/2011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식품 정보에 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라고 알려져 있음
- ❖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식품 라벨링법을 수정 및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라벨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식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00/13/EC :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 외양, 식품의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음
 - 90/496/EEC : 영양정보에 대한 라벨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음
- ❖ 위 2개의 법 내용을 포함, 그 외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 2014년 12월 13일 개정된 식품 라벨링법 No 1169/2011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에 대한 정보도 라벨링에 기입해야함

나.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적용 일정

- ❖ 2011년 12월 12일: Regulation(EU) No 1169/2011 발효
 - 2014년 12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거나(EC) No 1169/2011 규정의 필수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음
- ❖ 2014년 01월 01일: 다진 육류의 특정 필수 표기사항 적용 시작(부속조항 VI의 B 부분)
- ❖ 2014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적용
- ❖ 2016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 적용 시작
 -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3일 사이에는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실시는 업체의 자발성에 따름

다.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주요 내용

-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표기될 것 (최소한의 글자 폰트는 지킬 것)
- ❖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입할 것(레스토랑 등에 납품되는 비포장된 음식에도 해당)
- ❖ 기본적인 영양정보는 기입할 것
- ❖ 신선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는 반드시 알릴 것
- ❖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 정제된 오일 또는 지방에 사용된 채소류의 원산지를 기입할 것
- ❖ 다양한 종류의 고기(생선)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라는 문구를 넣을 것
- ❖ 해동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그 내용을 반드시 알릴 것

2. 라벨링 표기 및 변경사항

가. 의무 기재사항

- ❖ 제품명
- ❖ 제품성분 리스트
- ❖ 알레르기 항원인자
-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 의 함유량
- ❖ 제품의 실중량(net weight)
- ❖ 유효기간(최소한의 기간 또는 사용가능날짜)
- ❖ 보관 방법
- ❖ 회사명 및 주소
- ❖ 원산지
- ❖ 사용법
- ❖ 알코올 강도
- ❖ 영양정보

나. 주요 변경사항

- ❖ 의무 기재사항 중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 이중 원산지의 경우 한국 업체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없는 육류 제품의 원산지 내용만 변경됨

3. 표시방법 유의점

가. 알레르기 항원인자

- ❖ 아래 표에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 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성분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함
- ❖ 또한 보다 명확하게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알레르기 항원인자를 강조할 때는 ‘Contains’ 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인자 성분을 표기해야 함
- ❖ 구체적 표기 방식은 제품성분 리스트 규정에 따름

1.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키우트 또는 이들의 합성종 및 제품.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밀을 기본으로 한 텍스트로스를 포함한 포도당 시럽
- 밀을 기본으로 한 말토덱스트린
- 보리를 기본으로 한 포도당 시럽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곡물
2. 갑각류와 해당 제품들
3. 계란과 해당 제품들
4. 어류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비타민 또는 카로테노이드를 위한 보인자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 맥주와 와인에 청징제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또는 부레폴
5. 땅콩과 해당 제품들
6. 대두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완전히 정제된 대두유와 지방
- 대두에서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혼합된 토크페롤(E306), D-알과 토크페롤, D-알과 토크페롤 초산염, D-알과 토크페롤 숙신산
- 대두에서 유래한 식물 스테롤과 식물 스테롤 에스테르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 대두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스테롤로 제조된 스타놀 에스테르
7. 우유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유장
- 락티톨
8. 견과류: 아몬드(<i>Amygdalus communis L.</i>), 헤이즐넛(<i>Corylus avellana</i>), 호두(<i>Juglans regia</i>), 캐슈(<i>Anacardium occidentale</i>), 피칸 너트(<i>Carya illinoensis(Wangenh.) K. Koch</i>), 브라질넛(<i>Bertholletia excelsa</i>), 피스타치오 너트(<i>Pistacia vera</i>), 마카다미아 또는 퀴즐랜드 너트(<i>Macadamia ternifolia</i>)과 해당 제품들. 단,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9. 셀러리와 해당 제품들
10. 겨자와 해당 제품들
11. 참깨와 해당 제품들

12.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상태의 총 SO₂ 량을 기준으로 이황산과 황화의 농도가 10mg/kg 또는 10mg/L인 경우

13. 루핀과 해당 제품들

14. 연체동물과 해당 제품들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II)

나.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의 함유량

-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성분 또는 성분의 카테고리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 제품 이름에 성분 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 제품 라벨에 언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성분을 강조했을 때
 - 성분의 이름 또는 생김새 때문에 다른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특징화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때
 - 단, 'with sweetener(s)' 또는 'with sugar(s)'라는 문구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첨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정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가
 - 수분 제외 실증량을 이미 기재했을 때
 - 다른 유럽연합 조항에 따라 라벨링에 이미 함유량이 표기되었을 때
 - 향미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했을 때
 - 제품의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을 때
-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별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기함
 - 제품 사용 시점에서 각 성분의 양에 부합하는 %로 표기
 - 제품 이름의 바로 옆 또는 제품성분 리스트와 이어 표기
 - 제품이 열처리 또는 다른 처리 후에 수분이 손실될 경우, 완제품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성분별 함유량으로 표기
 - 휘발성 성분의 양은 완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표기
 - 농축 또는 건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재합성된 성분의 양은 농축 또는 건조되기 이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되는 농축 또는 건조 제품의 경우, 성분의 양은 재구성된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다. 영양정보

❖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열량
-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의 양

❖ 의무 영양정보 외에 보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불포화지방
- 다불포화지방
- 폴리올
- 전분
- 식이섬유
- 비타민 또는 미네랄: 상당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량에 대한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비타민 및 미네랄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Vitamin A(μg)	800	Chloride(mg)	800
Vitamin D(μg)	5	Calcium(mg)	800
Vitamin E(mg)	12	Phosphorus(mg)	700
Vitamin K(μg)	75	Magnesium(mg)	375
Vitamin C(mg)	80	Iron(mg)	14
Thiamin(mg)	1.1	Zinc(mg)	10
Riboflavin(mg)	1.4	Copper(mg)	1
Niacin(mg)	16	Manganese(mg)	2
Vitamin B6(mg)	1.4	Fluoride(mg)	3.5
Folic acid(μg)	200	Selenium(μg)	55
Vitamin B12(μg)	2.5	Chromium(μg)	40
Biotin(μg)	50	Molybdenum(μg)	50
Pantothenic acid(mg)	6	Iodine(μg)	150
Patassium(mg)	2,000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A

❖ 상당한 양의 비타민 및 미네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음료를 제외한 제품의 100g 또는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음료 제품의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7.5%일 때
- 패키지가 1회 분량일 경우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비타민 및 미네랄 외에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열량 또는 영양소	섭취 기준
열 량(Energy)	8,400kj / 2,000kcal
지방 총량(Total Fat)	70g
포화 지방(Saturates)	20g
탄수화물(Carbohydrate)	260g
설탕(Sugars)	90g
단백질(Protein)	50g
소금(Salt)	6g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B

❖ 열량 및 영양소 표시 단위 변환표는 아래와 같음

- carbohydrate	17 kj/g - 4 kcal/g
- polyols	10 kj/g - 2.4 kcal/g
- protein	17 kj/g - 4 kcal/g
- fat	37 kj/g - 9 kcal/g
- salatrims	25 kj/g - 6 kcal/g
- alcohol(ethanol)	29 kj/g - 7 kcal/g
- organic acid	13 kj/g - 3 kcal/g
- fibre	8 kj/g - 2 kcal/g
- erythritol	0 kj/g - 0 kcal/g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V

❖ 영양성분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여 표기함

energy	kJ/kcal
fat	g
of which	
- saturates,	g
- mono-unsaturates,	g
- polyunsaturates,	g
carbohydrate	g
of which	
- sugars,	g
- polyols,	g
- starch,	g
fibre	g
protein	g
salt	g
vitamins and minerals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V

4. 라벨링 규정 위반사례

- ❖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정보 시스템 RASFF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한국산에 대한 라벨링 문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 2016년 12월 말 기준, 라벨링의 정보 미비, 부정확한 정보 기입 등으로 총 28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2/05	독일	미국	식품보충제에 대해 카페인과 시네프린 함유에 대한 라벨링 오류	판매 중지
12/05	독일	미국	식품보충제에 대해 사용방법 라벨링 부재 및 독문 경고 정보 부재	판매중지 및 수거
8/19	영국	독일	우유와 콩 성분을 함유한 영양 음료에 대해 영문 라벨링 부재	판매중지 및 수거
7/25	영국	독일	머스타드가 들어간 혼합향신료에 영문 라벨링 부재	수입보류
6/14	오스트리아	체코	유기농 델스 플레이크에 대해 권장섭취량에 대한 라벨링 불충분	판매중지 및 수거
3/10	아일랜드	터키	유기농 행인에 대한 안전사용방법에 대한 라벨링 불충분	리콜
3/03	아일랜드	파키스탄	유기농 행인에 대한 사용방법 관련 라벨링 오류	리콜
1/29	이탈리아	이탈리아	유아용 썰아이스크림에 대해 글루텐 함유 미신고 및 라벨링 오류	리콜
1/25	아일랜드	영국	베이컨에 대해 날짜와 관련 라벨링 오류	판매중지 및 수거
1/21	영국	아일랜드	버번등갈비에 대해 저장 방법 관련 라벨링 오류	리콜

- ❖ 제 3의 국가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내 수출입 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라벨링 문제 사례는 종종 발견되고 있음
- ❖ 라벨의 정보 불충분 및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잘못된 정보 기입(예: 유통기한)의 이 유가 많았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보를 즉시 서로 공유하여 수입 불허, 판매 금지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 참고자료

❖ EU 라벨링 규정

http://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index_en.htm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http://www.food.gov.uk/news/>

❖ 새로운 EU 라벨링 규정(1169/2011/EU) 전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1R1169>

❖ 영국 식품안전청

- www.food.gov.uk/foodlabelling/

❖ 유기농 식품 관련 수입조건, 라벨링 관련 정보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index_en.htm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및 시사점

제 1 절

통관문제사례 분석

-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은 유럽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통관 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 2016년 유럽에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9건으로 6월 통관 거부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은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16년 월별 EU 식품 통관 거부 건수 ■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1	0	226	0.4%
2월	1	1	225	0.4%
3월	2	2	242	0.8%
4월	0	4	252	0.0%
5월	0	4	242	0.0%
6월	4	4	253	1.6%
7월	0	8	248	0.0%
8월	0	8	245	0.0%
9월	0	8	205	0.0%
10월	0	8	235	0.0%
11월	0	8	259	0.0%
12월	1	9	292	0.3%
합계	9	9	2,9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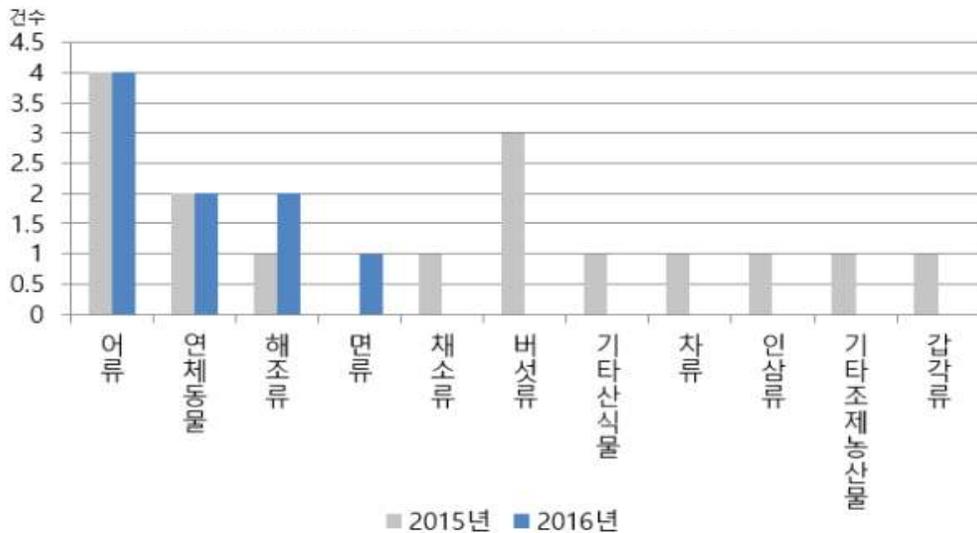
출처 : RASFF

□ 2016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6년 수산물이 8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면류(1건)가 차지함. 수산물에는 어류, 연체동물, 해조류가 포함됨

■ 2015~2016년 제품별 한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 ■

(단위 : 건)



제품 종류	2015	2016
어류	4	4
연체동물	2	2
해조류	1	2
면류	0	1
채소류	1	0
버섯류	3	0
기타산식물	1	0
차류	1	0
인삼류	1	0
기타조제농산물	1	0
갑각류	1	0
합계	16	9

출처 : RASFF

□ 2016년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는 성분 부적합·잔류농약이 차지함

❖ 2016년 통관 불합격 사유는 성분 부적합·잔류농약이 9건으로 전체를 차지함

■ 사례별 분류 ■



거부 사유	2015	2016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8	9
위생	3	0
비위생적 제조	0	0
라벨링/포장	2	0
서류미비	2	0
기타	1	0
합계	16	9

출처 : RASFF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016년 유럽 내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성분 규격 부적합(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가 두드러짐
 - ❖ 올해 통관 거부된 수산물 제품이 총 8건으로, 어류, 연체동물, 해조류가 포함됨
 - ❖ 한국산 수산물 식품은 2016년 통관 거부된 9건 전부 성분 규격 부적합 문제였으며,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카드뮴(중금속) 기준치 초과, 그 외에 요오드 기준치 초과 사유 등이 있었음
 - ❖ 벤조피렌(benzopyrene)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 중에서도 발암성이 가장 높은 1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임
 - ❖ Regulation(EC) No 835/2011에 의거, 수산물의 벤조피렌 최대허용량은 5.0 mg/kg이고, 벤조피렌, 벤조안트라센, 벤조플로란센, 크리센 합계의 최대허용량은 30.0 mg/kg임
 - ❖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2006년 올리브유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보도되었기 때문임. 또한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주민의 벤조피렌 노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음
 - ❖ 벤조피렌은 유기물이 불완전연소(不完全燃燒)할 때 생성되므로 주위환경에 널리 존재함. 식품의 경우 불꽃이 직접 식품에 접촉할 때 생길 수 있는데, 육류나 수산물을 불에 구울 때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만들어지고, PAHs 중에서도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함
 - ❖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물, 식용유지, 훈제육, 분유 등에서 유럽연합(EU)의 벤조피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럽연합에도 없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등)’과 일부 농산물에까지 기준을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기준치 참고자료 기재)

- ❖ 한편, 벤조피렌과 마찬가지로 적발 사유가 많았던 카드뮴의 경우 Regulation(EU) No 1881/2006에 의거, 수산물류의 카드뮴 최대허용량은 0.10 mg/kg, 육류의 카드뮴 최대허용량은 0.2 mg/kg, 식기의 카드뮴 이행 최대허용량은 0.3 mg/kg임
- ❖ 그 외에 1건 적발된 요오드 최대허용량은 수산물, 해조물이 0.01 mg/kg임
- ❖ 수산물 외에 적발된 면류의 경우 알루미늄이 110mg/kg 검출된 경우였으며, Regulation (EU) No 380/2012에 의거 밀가루가 포함된 제품의 알루미늄 최대허용량은 30 mg/kg - ppm임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 유럽연합 통관 시스템 현대화

- ❖ 본 법안은 위임법령(delegated act)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그 후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관세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관련 절차의 세부 실행법안 채택 후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규정을 위한 조사

- ❖ 2016년 12월에 발행된 EFSA의 보고서(Chemicals in food 2016 : Overview of selected data collection)에 따르면 EU 위원회와 EU 가입국들은 사람이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규제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 가정 요리를 통해서도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 될 수 있는 만큼 EFSA와 EU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인포그래피를 발간
- ❖ 아크릴아마이드의 신경계 장애 위험 요인이 연구됨
- ❖ 아크릴마이드는 잠재적인 위해요소이기에 하루제한용량을 정할 수 없지만 기준복용량 신뢰제한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BMDL10)을 건강주의수준으로 제시

- 종양 : 0.17mg/kg bw/day

- 기타 신경계질환 : 0.43 mg/kg bw/day

* mg/kg bw/day = milligrams per kilogram of body weight per day(몸무게 당 하루제한용량)

□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잔류량 논의

- ❖ 유럽연합은 EU에 수입되는 포도의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함
- 본 법안이 표결되면 대 EU 최대 포도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 EU집행위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식물의 성장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잔류량(MRL)을 현행 0.05ppm에서 0.01ppm으로 감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 CCL은 유해하지 않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포도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식품안전청에서는 1.06ppm 정도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규정함
- ❖ 최근까지 EU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량 검사 기계는 최대 0.05ppm 까지 검출이 가능했으나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0.01ppm까지 조사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앞으로는 정밀하고 엄격한 검사가 각 EU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지난 2015-2016년 인도산 포도는 약 60,000톤이 EU에 수출되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한 EU 국가로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독일이 차지함
- ❖ 올해 하반기 CCL의 잔류량 허용치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으로 논의 및 변동의 여지가 많은 농약에 관한 지속적인 숙지가 필요함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 L-트레오닌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는 가축 및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대장균(E-coli) 발효에 의해 제조 및 첨가된 L-트레오닌의 사용을 승인함
- L-트레오닌은 모든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업장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첨가물임
- 지난 2015년 3월 유럽연합식약청에서는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변형 대장균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의 첨가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섭취하는 소비자 및 환경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함
- 그러나 EU집행위에서는 과학적인 의견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L-트레오닌에 대한 추가의 연구를 요청, 마침내 EU식약청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은 인간을 포함, 어떠한 중에도 유전자 조작과 같은 위험을 끼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음

- 특히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는 L-트레오닌은 매우 유용한 물질로 반추위(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입 앞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삼킬 수 있는 특수한 위)의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함

❖ 글루텐프리(gluten-free) 식품

- 밀가루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은 유럽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는 글루텐 함량이 20ppm이하, 즉 1kg 당 20mg 이하여야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유럽에서 글루텐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라벨링을 통해 글루텐 정보를 기입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의 식약청에서는 다양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글루텐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실시, 글루텐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리콜 등의 후속 절차를 실행함
 - (독일)유기농 쌀로 만든 과자 : 글루텐 함량 137mg/kg-ppm으로 전량 회수
 - (독일)쿠키 ‘Reiszerge’ : 글루텐 초과 함량(85mg/kg-ppm), 소비자 리콜실시
 - (독일)글루텐 프리 시리얼 : 글루텐 초과 함량(60.6mg/kg-ppm), 소비자 리콜실시
- 건강을 중시하고 세계적인 ‘웰빙’ 추세에 따라 글루텐 프리 식품이 주목받고 있으나 글루텐 함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폐기 또는 리콜되는 제품이 각 국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EU 관세제도 관련

- ❖ 2016년 7월 한-EU FTA 체결된 지 5주년이 지남. 모든 품목(양허 제외인 특정 농산물 제외)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비 필요

▣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 : 관세율 %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식물계의류(8~13), 스키부츠(8,13), 인쇄기계(8),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컴퓨터 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위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아세탈수지(6.5), 천연색염색선관(14), 남성셔츠(1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및 그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안경(8), 변환및안정기(8), 식품가공기계(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계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파티클보드(8), 표면활정제(8), 밸브(8), 베어링(8), 의료용전자기기(8), X선및방사선기기(8), 합성고무(8) 등	없음

- ❖ 유럽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유럽산 농산물 수출품에 적용되는 복잡한 승인 절차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공연권과 지리적 표시제 등 한-EU FTA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갱신 요구됨

□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 ❖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을 대체키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킴.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됨
- ❖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키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함.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임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함
- ❖ 2014년 4월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함. 참고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
- ❖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 ❖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 ❖ 이 가운데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짐
 - 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일,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 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송이어야 함

■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

	항목	내용	시한 (YYMMDD)
1	등록 수출업체 관리 시스템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EU↔GSP 국가 각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2	BTI, 2+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1차: 2017.3.1. 2차: 2018.10.1
3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4	세관정보시스템(Uniform user management&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등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항목	내용	시한 (YYMMDD)
5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 (Proof of Union Status: 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	2017.10.2
6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
7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 고도화	2018.10.1
8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NCTS)	기존 NCTS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10.1
9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ES)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을 전면 전자화	2019.3.1
10	특별 통관절차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2019.10.1
11	특별 통관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단 데이터 생성은 주로 각 회원국에 관할)	2019.10.1
12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 (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에 관한 정보 및 절차의 회원국 간,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2020.3.2
13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CCI)	EU 차원의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2020.10.1
14	보증 관리(Guarantee Management)	복수 회원국 관련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	2020.3.2
15	안전, 보안, 위험 관리 (Safety,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송 중 안전,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 수입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과 위험관리시스템 대체 예정	추후 확정
16	분류(Classification)	관세 분류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의 단일 플랫폼 개발	추후 확정

-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의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함.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단,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음
-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됨
-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함(기존 절차 및 승인 의 연장은 불가능)
- ❖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임
 -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제 7 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제 1 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No.	제목	지역	EU
1	사전통관 검토 및 라벨링 자문 통해 현지 유명백화점 입점 지원	지역	기타가공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현지법인 직원파견을 위한 고용법령 숙지 필요 ○ EU 무농약, 글루텐프리 등 인증획득 및 교차인정 기준 애로 ○ 한국에는 있지만, 유럽에서는 소비한 적이 없던 품목의 수입바이어 설득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등 지원필요 *품목예시 : 참기름, 전통차, 차류, 쌀가공식품 등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프랑스 현지법인 직원 파견절차 및 의료보험 등 고용법 자문 - (통관·검역) 새품목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노벨푸드 인증획득 프로세스, 소요비용, 기존 노벨푸드 등록 품목리스트 및 해당 품목 통관조건, 관세 등 일체 자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노벨푸드 인증 (Novel Foods Certificat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EU회원국에서 기존에 소비되지 않았던 품목,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개발된 식품 등 신규식품 중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 ● 예상 소요기간/비용 : 2년 / 40,000€~100,000€ ● 등록절차 : ANSES(프랑스 노동, 환경 및 식품위생안전청) 노벨푸드 신청서 제출 → EU연합 회원국, 식품 안전청 서류검토 → EU최종결정 통보 ● 비교 : 2018년 1월 1일 간편화된 노벨푸드 등록절차 발효 예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한과류, 장류, 전통차 등 80개 품목에 대한 사전 통관 검토 및 라벨링 자문 - (검역) 식품수입 검역시 샘플링 검사 기본항목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원산지, 위생수위, 농약잔여함유량, 유전자변형, 포장용기 성분 등 ○ (EU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관할구역 라벨링 전문기관 구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식품(한과, 전통차, 장류 등) 프랑스 유명백화점 입점 ○ 법률·통관 등 자문으로 EU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식품 수입환경 조성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No.	제목	해당국가	EU
1	한국산 유제품 수입불가	관련품목	유제품
		유형	제도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일부 허가된 국가 외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수입허가국 리스트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음 - 인근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인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로 유제품 수입이 가능함 ○ 일부 한국 수출업체들은 성분함량에 유제품 포함 여부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유제품 포함 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상이 필요함 		

No.	제목	해당국가	EU
2	한국산 육류제품 수입불가	관련품목	육류 제품
		유형	제도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육류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 3국가를 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육류제품 수입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EU로 육류제품 수입이 불가능 함 ○ '16.12.31.까지는 라면 스프와 같이 육류 추출물, 육류 함축물, 육류 분말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EU 수출 시 수의 검사 면제 대상이 되었으므로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17.1.1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해당 식품들에도 육류제품과 동일한 수입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육류제품을 포함 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상이 필요함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 ❖ 지원 시기 : 연중 수시
- ❖ 서비스 대상국 18개국
 - (동아시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동남아(베트남, 인니, 말련, 태국, 인도 등)
 - (기타) 중동(UAE),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등)
- ❖ 지원 내용
 - 수입국 현지 전문기관이 비관세장벽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지원

지원 사업	지원비율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자문	전액	최대 10회 & 10백만원	○수입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자문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지원(자문)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률</td> <td>•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td> </tr> <tr> <td>통관</td> <td>•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td> </tr> <tr> <td>관세</td> <td>•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td> </tr> <tr> <td>SPS</td> <td>•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td> </tr> <tr> <td>기타</td> <td>•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라벨링* 지원	90%	10백만원	○ 각국 식품법령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제작 *사전 샘플 검역·검사 지원												
상표권* 지원	90%	10백만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및 출원지원 - 유사상표 조사 후 현지 상표국 출원 지원												

* 수산의 경우는 70% 지원

- ❖ 신청방법
 - On-line 신청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무역통계제공정보 동의서 등

2016년 EU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일 20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16년
EU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